

보도자료

2017. 4. 10.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송오섭(☎ 3480-1924)

공보관실 ☎ 3480-1451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양형위원회는 2017. 4. 10.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범죄, 위증·증거인멸범죄 수정 양형기준』 및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심의·의결 ⇒ 수정 양형기준은 2017. 5. 15., 새로이 설정된 양형기준은 2017. 7. 1. 시행 예정

①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양형기준을 수정함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변경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이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변경(2016. 6. 30. 시행)된 취지를 반영함
-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국내침해 유형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국외침해 유형의 경우 5년에서 6년으로 **상향**,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국내침해 유형의 경우 1년 6월에서 2년으로, 국외침해 유형의 경우 3년에서 3년 6월로 **상향** - 산업기술보호법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함
- 특별가중인자인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을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으로 수정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산업기술보호법의 법정형 상한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와 가별성 차이가 발생하여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관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정의규정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양형인자의 정의규정 중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예시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를 추가함

② 위증증거인멸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 위증범죄군에 사법질서방해범죄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증인은닉' 유형을 추가하여 양형기준을 수정함

◆ 증거인멸·증인은닉

○ ① 경제적 대가의 수수, ②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③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②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③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도주' 유형 및 '범인은닉·도피'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도주

○ ①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 **범인은닉·도피**

- ①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경제적 대가의 수수**,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4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필수적인 통화, 유가증권 등의 신용과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화 위조·변조 등' 유형**,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유형** 및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통화 위조·변조 등/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①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② **다량의 통화(유가증권)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③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 등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실제 유통되지 않은 경우 등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 **부정수표 발행 등**

- ①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등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②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③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

유형)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5]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대부업법위반' 유형 및 '채권추심법위반'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 대부업법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①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일회성 또는 단기간 영업인 경우 등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 ◆ 채권추심법위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 ①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③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②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6] 향후 일정

- 2017. 5. 관보 게재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 2017. 7. 1.부터 시행
-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7. 5. 15.부터 시행
- ※ 다음 회의는 2017. 4. 27. 개최 예정
(같은 날 제6기 양형위원회 출범)

I.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①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현행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은 2012. 6. 18. 의결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 후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보호객체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된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재검토하고,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함
-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양형기준을 수정함

② 구체적 수정 내용

■ 형량범위

- 대유형 3. 영업비밀침해행위 ⇨ 가중영역 상한을 국내침해의 경우 '4년', 국외침해의 경우 '6년'으로 상향하고, 기본영역의 상한을 국내침해의 경우 '2년', 국외침해의 경우 '3년6월'로 상향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6월 2년	1년 - 3년 4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3년6월	2년 - 5년 6년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변경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이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변경되었음(2016. 6. 30. 시행)
-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함

■ 양형인자

- 대유형 3.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특별가중인자 :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으로 수정
- 산업기술보호법의 법정형 상한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와 가별성 차이가 발생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다만, 기존 특별가중인자인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과 이중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 조정

○ 대유형 3.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특별가중인자 : '피해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로 수정하고, 양형인자의 정의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내용 추가

- 부정경쟁방지법은 피해자를 '영업비밀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기업보다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개념상 정확함
- 양형인자의 정의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표현을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로 수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 지식재산권범죄 중 등록침해행위와 저작권침해행위는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으나, 영업비밀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는 이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용상 오해가 없도록 양형인자 정의 부분을 '권리자(피해자)'로 수정함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등 침해의 경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가함

■ 집행유예 기준

-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에 대응하여 이를 집행유예기준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 을 추가함

■ 수정된 양형인자표

- 영업비밀침해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커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수정된 양형인자의 정의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 권리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수정된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 <u>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영업비밀침해행위)</u> ○ <u>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u>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II. 위증·증거인멸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① 수정 양형기준 주요 대상범죄

- 증거인멸·증인은닉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형법 제155조 제2항),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 증인은닉 등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155조 제3항)

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증거인멸·증인은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증거인멸·증인은닉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2	모해 증거인멸·증인은닉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6월 - 4년

③ 주요 특징

- 위증범죄군에 사법질서방해범죄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증인은닉'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추가함
- ◆ 증거인멸·증인은닉
 - ① 경제적 대가의 수수, ②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③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②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III.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

- 도주 :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형법 제145조 제1항), 수용 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죄를 범한 자(형법 제146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형법 제147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때(형법 제148조)
- 범인은닉·도피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형법 제151조)

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주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특수도주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3	도주원조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6월 - 5년

2. 범인은닉·도피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범인은닉·도피	- 6월	4월 - 1년	8월 - 2년

③ 주요 특징

-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도주' 유형 및 '범인은닉·도피'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 도주
 - ①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 ◆ 범인은닉·도피

- ①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경제적 대가의 수수,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IV.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형법 제207조 제1항),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형법 제214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 기재(형법 제215조), 제214조 내지 제215조 기재 유가증권을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수출(형법 제217조),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 **부정수표 발행 등** : 부정수표 발행 또는 작성(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수표부도(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수표금액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통화 위조·변조 등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6년

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1년	6월 - 2년	1년 - 3년
2	수표 위조·변조	6월 - 1년	10월 - 2년	1년 - 4년

3.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부정수표 발행, 작성 / 수표부도	- 1년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허위 신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③ 주요 특징

-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필수적인 통화, 유가증권 등의 신용과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화 위조·변조 등’ 유형,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유형 및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에 대하여 양형기준 마련
- ◆ 통화 위·변조 등/유가증권 등 위·변조 등
 - ①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② 다량의 통화(유가증권)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③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 등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실제 유통되지 않은 경우 등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특별감경인

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 부정수표 발행 등

- ①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등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②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③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V.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① 양형기준 설정 주요 대상범죄

-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대부업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자(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채권추심법위반** :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자(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②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대부업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중개수수료 수령 등			
2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2. 채권추심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4월 - 10월	6월 - 2년
2	폭행, 협박 등 행위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③ 주요 특징

-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대부업법위반' 유형 및 '채권추심법위반'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 대부업법위반
 - ①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일회성 또는 단기간 영업인 경우 등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
- ◆ 채권추심법위반
 - ①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③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①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② 범행가
답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